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가합56008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김경선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전준오

변론종결 2021. 2. 25.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846,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1.48%, 그 다음날부터 2017. 12. 31.까지는 연 1.47%, 그 다음날부터 2018. 6. 30.까지는 연 1.77%, 그 다음날부터 2018. 9. 30.까지는 연 1.82%, 그 다음날부터 2018. 12. 31.까지는 연 1.80%, 그 다음날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96%, 그 다음날부터 2019. 6. 30.까지는 연 1.92%, 그 다음날부터 2019. 9. 30.까지는 연 1.85%, 그 다음날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1.52%, 그 다음날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1.63%, 그 다음날부터 2020. 6. 30.까지는 연 1.43%, 그 다음날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1.06%, 그 다음날부터 2021. 3.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846,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8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군포송정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군포송정지구는 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위 사업지구가 2010. 5. 7.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되었다가 2014. 6. 16.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면서 위 사업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무상귀속 협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유상매수협의취득 절차를 거쳐 2017. 5.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총 355,846,94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355,846,94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7.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이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무상귀속 협의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부득이 사업일정에 맞추고자 피고들에게 위 유상취득면적 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는 정당한 원인 없이 위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 제19조 제1항,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한 공공용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관련 사안) 등 참조]

2)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1913. 6. 총훈 제33호, 폐지)에 의하면,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18개의 지목 중 1개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한 동을 단위로 한 필지마다 순차로 지번을 부여하나(토지조사령 제2조 제1항 본문, 위 조사규정 제26조 본문),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인 토지에 대하여는 민유지에 속하는 것 외에는 지번을 부여하지 않고(토지조사령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 조사규정 제26조 단서), 도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및 수도선로로서 민유의 신고 없는 토지와 하천 · 호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조사를 하지 않도록(위 조사규정 제17조) 규정하고 있었다. 또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는 토지대장 규칙(1914. 5. 2. 총령 제45호, 폐지) 제1조 제3항에서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50. 12. 1.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지적공부에 등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는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참조).

3) 또한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각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 및 분할 과정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1911년(명치 44년)경 완성된 측량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안산군 반월 북방면 도마교리에 관한 지적원도(이하 '이 사건 지적원도'라 한다)에는 별지2 기재 분할 전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도(道)' 또는 '천(川)'으로 그 구역이 측량되어 지목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주변의 다른 토지와는 달리 지번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다) 분할 전 토지 중 도마교동 440 토지는 1996. 2. 21., 도마교동 441 토지는 1988. 1. 15., 도마교동 4402토지는 1955. 6. 10., 도마교동 443 토지는 1988. 1. 15. 국가를 소유자로 하여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목이 '하천'인 토지는 1966. 2. 21.에,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1988. 1. 15.에 각 국가를 소유명의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2017. 2. 23.에 용도폐지 결정되어 2017. 4. 18. 관리청이 기획재정부로 변경되었다. 그러다가 이 사건 각 토지는 2017. 5. 17.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도로, 하천이었다가 2017. 1. 10.에 그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그 현황이 도로, 하천으로 조사되어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토지들로서 조선총독부 소관인 국유재산이었다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의 공공용재산이 되었다.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당초의 지목과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이전에 도로나 하천부지로서 실체를 갖추어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토지로서, 설령 그 이후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묵시적으로 용도폐지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이후인 2017. 2. 23. 각

용도폐지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 제19조 제1항,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이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 하천인 토지가 공공용재산으로 편입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실제의 이용현황 역시 도로, 하천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 해당부분의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그 지목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제19조 전문 단서는 '1지목의 토지에 포함 또는 연속하는 다른 지목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협소한 것은 이를 본토지에 병합해서 조사할 수 있다', 제20조는 '도로, 하천 또는 구거에 연한 소면적의 죽목, 초생지 등은 실지의 상황에 의해 그 접속하는 토지에 병합하여 조사한다', 제23조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및 성첩에 속하는 지역 내라고 인정되는 토지는 실제로 이를 경작하고 또는 건물을 건설하는 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또는 성첩으로 조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토지 해당 부분에 관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위 각 토지 중 일부의 현황이 실제로는 도로, 하천이 아니었음에도 그 전부가 도로, 하천으로 조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② 설령 위 각 토지 중 일부가 도로, 하천이 아닌 다른 용도로 실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 제19조 후문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등에 의해 자연구획인 것 및 특히 별도의 필지로 된 것을 적절히 하는 것은 전항에 의하지 않고 이를 각 일필지로 조사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비록 1필지가 조사된 부분 중 일부(소면적)가 직접적으로 도로, 하천으로 이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필지로 나누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1필지로 조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그 부분이 반드시 도로, 하천이 아니라고 평가할 것도 아닌 점, ③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작성된 폐쇄지적도(갑 제7호증의 1)에 나타난 이 사건 각 토지상의 하천 형상과 이 사건 지적원도(갑 제6호증의 2) 상의 하천 형상이 동일한 점, ④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작성된 후에도 그 지목을 계속하여 도로, 하천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까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드는 조사규정 조항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공공용재산으로 조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도로, 하천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¹⁾. 그러나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공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는 현황사진(을 제1호증),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실시계획 승인고시(을 제3호증)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제 도로 및 하천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공공시설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실시계획 승인고시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 및 하천으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현황사진은 2016. 1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용도폐지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현황을 조사하여 촬영한 사진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당시인 2007. 12. 24.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이 사건 각 토지의 당시의 이용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승인 당시 도로 및 하천으로 관리·이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및 범위

1) 관련 법리

가)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승인 당시의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고, 이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관리청에게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시점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사업시행자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원시취득하게 되는바, 관리청 등이 사업시행자의 무상귀속 협의절차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그 사업일정을 맞추고자 사업시행자가 유상매수협의취득 및 토지수용절차를 걸쳐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취득하였다면, 가사 매매계약과 토지수용절차에서의 재결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청 등이 정당한 원인 없이 보상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셈이 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28744 판결(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관련 사안) 참조].

나) 국유재산법 제75조는 '국가는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오납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등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반환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율의 성질을 가진다. 반환 가산금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5조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오납된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매수인이 반환을 청구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율의 성질을 가지는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청구권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청구권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080 판결 등 참조).

2) 매매대금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이었음에도, 피고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상 무상귀속 규정을 위반하여 위 토지에 대한 무상귀속을 거부하고, 원고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55,846,9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5,846,9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과오납 반환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

원고는 부대청구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355,846,940원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이러한 청구에는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국유재산법 제75조의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는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말하고,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15호, 2013. 8. 19.)」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에 관하여 분기별 변동이자율의 형태로 하며(제1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A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정하고 있다(제1조 제2항).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연합회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및 이에 따른 기간별 적용 이자율은 별지4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355,846,940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로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인 2017. 5. 18.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날인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7. 10.까지는 위와 같은 가산금율을 적용한 가산금을, 그 다음날부터는 이행자체로 인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34,79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1.48%, 그 다음날부터 2017. 12. 31.까지는 연 1.47%, 그 다음날부터 2018. 6. 30.까지는 연 1.77%, 그 다음날부터 2018. 9. 30.까지는 연 1.82%, 그 다음날부터 2018. 12. 31.까지는 연 1.80%, 그 다음날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96%, 그 다음날부터 2019. 6. 30.까지는 연 1.92%, 그 다음날부터 2019. 9. 30.까지는 연 1.85%, 그 다음날부터 2019. 12. 31.까지는 연 1.52%, 그 다음날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1.63%, 그 다음날부터 2020. 6. 30.까지는 연 1.43%, 그 다음날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1.06%,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2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석근 판사 전경호 판사 남민영

별지1

부동산목록

연번	소재지	면적
1	경기도 군포시 [REDACTED] 440-3	252㎡
2	경기도 군포시 [REDACTED] 440-8	183㎡
3	경기도 군포시 [REDACTED] 440-13	121㎡
4	경기도 군포시 [REDACTED] 441-2	82㎡
5	경기도 군포시 [REDACTED] 441-9	57㎡
6	경기도 군포시 [REDACTED] 441-10	333㎡
7	경기도 군포시 [REDACTED] 441-12	105㎡
8	경기도 군포시 [REDACTED] 441-13	43㎡
9	경기도 군포시 [REDACTED] 442	68㎡
10	경기도 군포시 [REDACTED] 443-1	192㎡

별지2

토지 종래 지목 및 분할과정

순번	이 사건 각 토지	종래 지목	분할 전 토지	비고
1	440-3	천	440	갑5호증의 1내지3
2	440-8	천		
3	440-13	천		
4	441-2	도	441	갑 제5호증의 4내지8
5	441-9	도		
6	441-10	도		
7	441-12	도		
8	441-13	도		
9	442	도	442	갑 제5호증의 9
10	443-1	도	443	갑 제5호증의 10

관련 법령

□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어 2008. 4. 7. 시행된 것)

제1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단지조성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동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이 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자"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7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별지4

[기간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표

기간별 적용 이자율

표

1) 2021. 2. 22.자 준비서면 참조